

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단서 중 “25년”을 “5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한 경과조치)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, 이를 가중할 때의 상한은 25년에서 50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「형법」이 개정(법률 제102569호 2010. 4. 15 공포, 10. 16 시행)됨에 따라 외국에서 형 집행 중에 국내에 인도된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기 자유형의 상한을 「형법」과 동일하게 5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1년 4월 5일

국무총리 김 황 식

국무위원 이 귀 남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0539호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

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6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생명, 상해, 질병,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(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). 다만,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,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8.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(적금·부금·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). 다만, 그 금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,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246조제1항제7호·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,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1년 4월 5일

국무총리 김 향 식

국무위원 이 귀 남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0540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4호 중 “선임”을 “구성·수·선임”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회장
- 2. 부회장
- 3. 상임이사
- 4. 이사
- 5. 감사

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9조의2(회장)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,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